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00491		
등록번호	110111-5004918		
상 호	주식회사 백패커 (Backpackr Inc.)	. . .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06, 605호(문래동1가)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68(봉천동)	2014.05.02 변경 2014.05.07 등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5, 5층(서교동, 아뜨레빌딩)	2015.03.19 변경 2015.03.23 등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5안길 28, 3층(서교동)	2017.01.26 변경 2017.02.09 등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12(서교동)	2019.10.07 변경 2019.10.15 등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ackpa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 주		
보통주식	2,000 주	금 1,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2,000 주		2014.05.03 변경
보통주식	22,000 주	금 11,000,000 원	2014.05.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3,404 주		2014.10.02 변경
보통주식	23,404 주	금 11,702,000 원	2014.10.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6,934 주		2014.12.04 변경
보통주식	23,404 주		2014.12.04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3,530 주	금 13,467,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9,287 주		2014.12.23 변경
보통주식	23,404 주		2014.12.26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금 14,643,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740 주		2016.05.14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10일 17시57분01초

등기번호	50049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23,40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전환우선주식 10,453 주	금 19,870,000 원	2016.05.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1,658 주 보통주식 23,40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전환우선주식 10,453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1,918 주	금 25,829,000 원	2018.09.04 변경 2018.09.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1,969 주 보통주식 23,71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전환우선주식 10,453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1,918 주	금 25,984,500 원	2019.05.03 변경 2019.05.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9,281 주 보통주식 23,71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전환우선주식 10,453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1,918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7,312 주	금 29,640,500 원	2020.05.30 변경 2020.06.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0,101 주 보통주식 23,71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883 주 전환우선주식 10,453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1,918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8,132 주	금 30,050,500 원	2020.06.02 변경 2020.06.02 등기

목 적			
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2. 정보화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3.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5.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4.05.02 삭제	2014.05.07 등기>	
5. 통신판매업	<2014.05.02 추가	2014.05.07 등기>	
6. 전자상거래업	<2014.05.02 추가	2014.05.07 등기>	
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4.05.02 추가	2014.05.07 등기>	
	<2014.06.21 삭제	2014.07.04 등기>	
7. 상품판매 중개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8. 수공예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9. 결재대금 예치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0. 전자지급결재대행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10일 17시57분01초

등기번호	500491
------	--------

1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2. 택배, 배달, 운송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3. 물류창고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4. 광고대행업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5.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4.06.21	추가	2014.07.04	등기>
15. 휴게음식점업	<2019.01.21	변경	2019.01.31	등기>
16. 도서관매업	<2019.01.21	추가	2019.01.31	등기>
1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9.01.21	추가	2019.01.31	등기>
17. 공간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대관업)	<2019.04.30	변경	2019.05.07	등기>
18.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전대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19. 도서출판업(일반서적,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타인쇄물등)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0. 행사대행서비스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1. 광고서비스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2. 전시, 행사 기획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3. 일반음식점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4. 음료 및 커피, 차류, 제과류 판매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5. 주류판매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6. 위 각호의 교육서비스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7. 위 각호의 무역업, 수출입업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2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9.04.30	추가	2019.05.07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신중숙 571106-*****	2013년 11월 21일 사임	2013년 11월 22일 등기
대표이사 신중숙 571106-*****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도천길 38-26	2013년 11월 21일 사임	2013년 11월 22일 등기
사내이사 김동철 840130-*****	2015년 11월 19일 중임	2015년 12월 01일 등기
	2018년 11월 19일 중임	2018년 1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김동환 820217-*****	2013년 11월 21일 취임	2013년 11월 22일 등기
	2015년 11월 19일 사임	2015년 12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김동환 8202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안길 12-4(합정동)	2013년 11월 21일 취임	2013년 11월 22일 등기
	2015년 11월 19일 사임	2015년 12월 01일 등기
사내이사 김동환 820217-*****	2015년 11월 19일 취임	2015년 12월 01일 등기
	2018년 11월 19일 중임	2018년 11월 27일 등기
대표이사 김동환 8202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안길 12-4(합정동)	2015년 11월 19일 취임	2015년 12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김동환 8202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6길 26-6, 202호(성산동, 마포골든카운티 비동)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00491
2017년 04월 25일 주소변경	2018년 09월 04일 등기
2018년 11월 19일 중입	2018년 11월 27일 등기
사외이사 박희은 861129-*****	
2016년 05월 02일 취임	2016년 05월 16일 등기
2019년 05월 02일 중입	2019년 05월 07일 등기
사외이사 송영돈 831002-*****	
2018년 08월 31일 취임	2018년 09월 04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 1)상환가액:상환가액은 본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과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하되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2)상환기간:신주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의일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3)전환방법: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발행일 의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언제든지 전환할수 있다. 본건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4)전환비율: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014년 12월 04일 변경 2014년 12월 0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 1)전환방법: 본건 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의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전환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2)전환비율: 본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본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2016년 05월 14일 설정 2016년 05월 16일 등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 (1)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주 1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2)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3)전환권에 대한 사항
1)전환방법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의 의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 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 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 전환비율

1.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2.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2조에 정한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이하 “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이하 “저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이하 “저가발행”)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보통주 1주X [저가발행 후 발행주식총수X당초 발행가액] / {[저가발행 전 발행주식총수X당초 발행가액] +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수(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전환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수)X저가 발행가액]}

3. 회사의 (i) 기업공개 시 또는 (ii)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에는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a) 공모가격의 70% 또는 (b) 합병비율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항에서의 기업공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 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인정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가격을 조정한다. 본 조에 따른 전환비율/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4)상환권에 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018 년 09 월 04 일 설정 2018 년 09 월 04 일 등기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

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잔여 재산 분배에 참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의 총 기업가치 또는 해당 사유 발생으로 인한 총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회사에 상법상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전체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회사가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이로 인해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소멸회사가 되고, 위 합병 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회사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존속회사(신설회사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합병 신주(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존속회사의 자기주식)가 존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회사의 신규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보통주주의 구주 처분(보통주주에 대한 공동매도권 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같이 매도되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각분도 포함) 및/ 또는 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주식양수인(신주인수인을 포함)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계산을 포함)으로 직 ∙ 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등기번호

500491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2.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2조에 정한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이하 “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이하 “저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이하 “저가발행”)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보통주 1주X [저가발행 후 발행주식총수X당초 발행가액] / {[저가발행 전 발행주식총수X당초 발행가액] +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수(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전환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수)X저가 발행가액]}

3. 회사의 (i) 기업공개 시 또는 (ii)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에는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a) 공모가격의 70% 또는 (b) 합병비율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 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항에서의 기업공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 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인정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다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가격을 조정한다. 본 조에 따른 전환비율/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4) 회사는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에 의한 조정액 또는 재조정액을 즉시 산정한 후, 당해 조정 또는 재조정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조정 또는 재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당시 본건 우선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제공한다.

(5)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발행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본건 우선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

등기번호	500491
------	--------

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식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단, 상환기간(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의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상환 의무는 소멸한다. 이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상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식인수대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6)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단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주식배당 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한 종류의 주식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0년 05월 30일 설정 2020년 06월 01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에 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2014년 12월 03일 말소 2014년 12월 04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등기번호	500491
------	--------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2)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

회사성립연월일	2012년 11월 19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2년 11월 19일 등기
-------------------------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